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내란·외환·반란죄 관련 수사방해죄 신설 〉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544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 15.
3. 회 부 일 : 2025. 1.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내란죄 등의 혐의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출석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하고 소환조사에 불응하여 수사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대통령의 이와 같은 태도는 수사 지연 등을 위한 고의적인 회피라고 볼 수 있음.

이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사항인바, 내란, 외환, 또는 반란의 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거부·기피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45조의11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내란, 외환 또는 반란죄¹⁾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기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수사방해죄’를 신설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45조의11(수사방해죄) 내란, 외환, 또는 반란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에 따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법 제200조²⁾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는바, 이를 ‘피의자신문’이라 함. 피의자신문은 현행법상 대표적인 임의수사 방법의 하나로,

1) 「군형법」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진술을 통하여 직접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일 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자기에 유리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음.³⁾

그러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죄 혐의 등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인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체포·구속되었고,⁴⁾ 구속 이후에도 출석요구를 계속 거부하여 피의자신문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⁵⁾ 이로 인해 수사를 통해 국가적 법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나아가 국가 존립을 위한 형벌권 실현이라는 목적이 과도하게 제한되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음.

이에 개정안은 내란, 외환 또는 반란죄의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기피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국가적 법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의 신문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함으로써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가 인정될 수 있음.

3) 이재상·조균석·이창운, 「형사소송법」, 제15판, p146.

4) 경향신문, “윤석열, 3차 출석 요구도 불응…공수처, 결국 체포영장 꺼낸다”, 2024. 12. 29.

5) 연합뉴스, “공수처, ‘조사불응’ 尹대통령 조사실로 강제구인 시도 중”, 2025. 1. 20., 연합뉴스TV, “특검, 尹 체포영장 집행 실패…”완강히 거부”, 2025. 8. 1., KBS, “尹 체포영장 재집행 무산…“완강한 거부로 부상 우려””, 2025. 8. 7. 등

다만, 헌법상 진술거부권⁶⁾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현행법상 피의자신문의 법적 성질은 ‘임의수사’에 불과하므로,⁷⁾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출석한 때에도 언제나 퇴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⁸⁾ 임의수사인 피의자신문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피의자의 출석을 강제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도 있어 보임.

나아가, 개정안의 취지가 내란·외환·반란죄 관련 피의자신문에 한정하여 그 법적 성질을 ‘강제수사’로 변경하려는 것이라 보더라도, 현행법 제200조의2⁹⁾에 따르면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함으로써 신문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제201조¹⁰⁾에 따라 피의자를 구속한 후 구

6) **헌법 제12조**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7) 대법원 2013. 7. 1. 결정 2013모160

8) 이재상·조균석·이창은, 위의 책, p147.

9)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④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금된 피의자를 수사기관으로 구인하여 신문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¹¹⁾ 개정안과 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정형을 신설하는 것은 그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문 의 처
02)6788-5048

10)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⑤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1) 대법원은 2013. 7. 1. 결정 2013모160 사건에서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로의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의 효력을 바탕으로 사실상 강제처분과 유사하게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의무를 인정한 바 있음. 다만,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그 피의자신문 절차는 어디까지나 법 제199조제1항 본문, 제200조의 규정에 따른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의자는 헌법 제12조제2항과 법 제244조의3에 따라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그와 같은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하여 피의자신문은 임의수사이며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여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조기영, “구속피의자의 수사기관 조사실 출석의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통권 제42집, 2014. 9. p83